

# 부천시 재활용품선별장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

## 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8년 10월 7일 부천시장 제출

나. 회부일자 : 2008년 10월 7일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

- 제147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(2008년 10월 16일)  
상정·의결

## 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 설명자 : 청소과장 서근필)

### 가. 제안이유

- 부천시 폐기물 종합 처리 시설내 재활용품선별장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하여 전문적인 운영능력이 있는 자에게 민간위탁을 하고자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3항의 규정에 의거 사전에 부천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함.

### 나. 관련근거

- 폐기물관리법 제14조(생활폐기물의 처리 등), 동법 제62조(권한이나 업무의 위임과 위탁)
-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(민간위탁대상 사무의 기준 등)

## 다. 주요내용

### ○ 위탁 대상 시설 현황

- 위 치 : 부천시 오정구 대장동 607번지
- 연간 처리량(2007년 기준)
  - 반입량: 16,950톤 -선별량: 6,650톤 -선별율: 39% -매각금액: 1,381백만원
- 시설내역

시 설 명	주요시설	시설용량	비 고
재활용품선별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컨베이어 5개소</li> <li>• 풍력선별기1대</li> <li>• 여과집진기1대</li> <li>• 압축기 2대</li> <li>• 트롬벨스크린2대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시설용량(150톤/일)</li> <li>• 처리용량(100톤/일)</li> </ul>	연면적 3,541.35㎡
스티로폼처리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감용기 1식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처리용량(12톤/일)</li> </ul>	연면적 532.43㎡
중 장 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지게차 2대</li> <li>• 암롤차 1대</li> <li>• 페이로다 2대</li> <li>• 집게차 1대</li> </ul>		

### ○ 민간위탁 방식 : 독립채산제형(시설, 장비, 토지 무상임대)

- 위탁대행수수료 : 336,000천원/년 (시 세외수입으로 추가이익 환수)
  - ☞ ‘재활용품선별장 민간위탁을 위한 타당성 및 증가원가분석 연구용역’결과

### ○ 민간위탁 내용

- 반입폐기물의 성상별 분류
- 파쇄, 압축, 선별시설 등의 관리 및 유지보수
- 선별장에서 발생하는 침출수 및 오 폐수의 처리
- 재활용가능자원의 선별 보관 계량 반출 및 판매
- 선별 잔재물의 적정 처리

- 그 밖에 선별장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
- 수탁업체 자격 : 공고일 현재 부천시에 사업장을 두고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자
  - 부천시에서 폐기물관리법 제25조3항의 규정에 의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이나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동법 제46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재활용신고를 받은 자
  - 폐기물 처리실적이 있는 자로 법인의 경우 자본금 5천만원 이상 개인인 경우 재산 평가액 1억원 이상인자
  - 공고일부터 1년 전까지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및 부정당업자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
- 수탁기관 선정방침
  - 공개모집에 의한 위탁업체 선정으로 행정의 투명성 제고
  - 민간위탁적격심사위원회(9명)에서 심의 선정
- 위탁 계약기간 : 2년
- 시설장비의 유지 범위
  - 대수선(신축, 증축 등 자산의 증가)은 시에서, 소수선(수리, 수선 등 성능 유지)은 수탁업체에서 부담
  - 선별장내 시설, 장비, 토지는 수탁업체에 무상제공하나 그에 수반되는 수리비, 유지비, 운영비 및 제 공과금은 수탁업체 부담
- 선별장 기존인력의 재배치 : 가로환경미화원으로 전원 전환배치

### 3. 주요질의 및 답변 요지

질 의	답 변
<p>○재활용품선별장을 공개모집하면 몇 개 업체가 참가할 수 있나?</p> <p>○위탁운영시 협약서 작성할 때 기계에 대한 대수선비와 소수선비에 대한 비용에 대해 명확한 근거에 의해 위탁을 줄 수 있는 방안은 있는지?</p> <p>○위탁업자를 어떤 방법으로 선정할 것인지?</p> <p>○336백만원의 세외수입이 발생되는데 업체가 부도가 나면 이에 대한 시의 징수 대책은 있는지?</p> <p>○재활용 잔재물이 27%정도로 규정하여 수입과 비용을 산출하였는데 위탁업체를 감독할 수 있는 방안은 있는지?</p> <p>○336백만원의 세외수입이 발생되는데 법인 자본금이 5천만원, 개인업자는 자본금이 1억원인데 부도시 위험성 있으므로 자본금 금액을 상향 검토할 방안은 있는지?</p> <p>○재활용 선별원 29명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있는지?</p>	<p>○현재 24개 업체 정도가 참가 할 것으로 예상됨.</p> <p>○향후 업체가 선정되면 협약서를 세부적으로 작성하도록 조치할 계획임.</p> <p>○9명으로 적격심사 위원회를 구성하고 3배수인 24명으로 위촉받아 무작위로 8명의 위원을 위촉하여 적격심사 위원회를 구성하여 위탁업자를 선정 하겠음.</p> <p>○분기별로 징수하도록 하겠으며, 부도에 대비하여 보증보험증권에 가입하도록 조치하고 협약서 작성시 구체적으로 명시하겠음.</p> <p>○타시군을 벤치마킹하고 용역보고서를 근거로 재활용 잔재물을 산출하였으며 업체 선정 후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겠음.</p> <p>○자본금 상향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 하여 추진하겠음.</p> <p>○가로환경 미화원으로 채용하는 방안 으로 노조와 협상이 되었음</p>

#### 4. 토론요지

가. 찬성토론 : 없 음

나. 반대토론 : 없 음

#### 5. 심사결과

○ 원안의결

#### 6. 소수의견의 요지

○ 없 음

#### 7. 기타 필요한 사항

○ 부천시 재활용품선별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의견서를 반영  
토록 조치

## 부천시 재활용품선별장 민간위탁 동의안 의견서

의안번호	321	안건명	부천시 재활용품선별장 민간위탁 동의안
제 출 자	부천시장	의 결	제147회 부천시의회 (임시회)
		연월일	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 (2008. 10. 16)

### 부천시 재활용품선별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의견서

- 부천시 폐기물 종합처리시설내 재활용품선별장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전문적인 운영능력이 있는 자에게 민간위탁을 하고자 「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」 제4조 규정에 따른 부천시 재활용품선별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
  - 위탁업체의 부도 등 사고시 선별장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위탁계약 체결 때 철저한 방안 강구
  - 위탁업체가 납부하여야 할 위탁대행수수료의 체납이 발생되지 않도록 수탁업체의 자본금 상향 조정, 보증보험서 징구 등 방안 강구
  - 재활용품의 선별률을 높이기 위한 위탁업체의 기술혁신 등을 촉구하여 인건비 절감에만 의존하는 운영이 되지 않도록 함
  - 시설장비의 유지에 있어 대수선비 및 소수선비의 수리내역을 협약서에 정확히 명시하여 업무 분담을 명확화
  - 전문적인 운영능력이 있는 업체가 선정되어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민간위탁 적격심사위원회 위원을 객관성 있게 선정
  - 되도록 많은 업체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참가자격의 완화 등 검토
  
- 이상과 같은 의견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의견으로 원안의결을 함

2008. 10. 16.

부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

# 부천시 재활용품선별장 민간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제321호
의결 년월일	2008. 10. 24. (제147회)

제출년월일 : 2008. 10. 7.

제 출 자 : 부 천 시 장

## □ 제안이유

- 부천시 폐기물 종합 처리 시설내 재활용품선별장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하여 전문적인 운영능력이 있는 자에게 민간위탁을 하고자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3항의 규정에 의거 사전에 부천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함.

## □ 관련근거

- 폐기물관리법 제14조(생활폐기물의 처리 등), 동법 제62조(권한이나 업무의 위임과 위탁)
-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(민간위탁대상 사무의 기준 등)

## □ 주요내용

- 위탁 대상 시설 현황
  - 위 치 : 부천시 오정구 대장동 607번지
  - 연간 처리량(2007년 기준)
    - 반입량 : 16,950톤    -선별량 : 6,650톤
    - 선별률 : 39%    -매각금액: 1,381백만원

• 시설내역

시 설 명	주요시설	시설용량	비 고
재활용품선별장	• 컨베이어 5개소 • 풍력선별기1대 • 여과집진기1대 • 압축기 2대 • 트롬벨스크린2대	• 시설용량(150톤/일) • 처리용량(100톤/일)	연면적 3,541.35㎡
스티로폼처리장	• 감용기 1식	• 처리용량(12톤/일)	연면적 532.43㎡
중 장 비	• 지게차 2대 • 암롤차 1대 • 페이로다 2대 • 집게차 1대		

- 민간위탁 방식 : 독립채산제형(시설, 장비, 토지 무상임대)
  - 위탁대행수수료 : 336,000천원/년 (시 세외수입으로 추가이익 환수)
    - ☞ ‘재활용품선별장 민간위탁을 위한 타당성 및 증가원가분석 연구용역’결과
- 민간위탁 내용
  - 반입폐기물의 정상별 분류
  - 파쇄, 압축, 선별시설 등의 관리 및 유지보수
  - 선별장에서 발생하는 침출수 및 오 폐수의 처리
  - 재활용가능자원의 선별 보관 계량 반출 및 판매
  - 선별 잔재물의 적정 처리
  - 그 밖에 선별장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
- 수탁업체 자격 : 공고일 현재 부천시에 사업장을 두고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자
  - 부천시에서 폐기물관리법 제25조3항의 규정에 의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이나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동법 제46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재활용신고를 받은 자
  - 폐기물 처리실적이 있는 자로 법인의 경우 자본금 5천만원 이상 개인인 경우 재산 평가액 1억원 이상인자
  - 공고일부터 1년 전까지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

사실이 없는 자 및 부정당업자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

- 수탁기관 선정방침
  - 공개모집에 의한 위탁업체 선정으로 행정의 투명성 제고
  - 민간위탁적격심사위원회(9명)에서 심의 선정
- 위탁 계약기간 : 2년
- 시설장비의 유지 범위
  - 대수선(신축, 증축 등 자산의 증가)은 시에서, 소수선(수리, 수선 등 성능 유지)은 수탁업체에서 부담
  - 선별장내 시설, 장비, 토지는 수탁업체에 무상제공하나 그에 수반되는 수리비, 유지비, 운영비 및 제 공과금은 수탁업체 부담
- 선별장 기존인력의 재배치 : 가로환경미화원으로 전원 전환배치

## □ 기대효과

- 직영 운영시 2008년도 추정 운영원가 2,017백만원, 재활용품매각 금액 1,583백만원으로 434백만 원이 적자이나
- 민간 위탁시 2009년 314백만 원 흑자, 2010년 358백만 원 흑자로 2년 평균 336백만원의 흑자 예상

## □ 그간의 추진 사항

- 타시군 민간위탁 운영사례 수집 ----- '08.3.26~3.27
  - 성남, 안양, 안산, 의정부시
- 재활용품선별장 민간위탁 추진방안 상신 ----- '08. 4.16
- 재활용품선별장 민간위탁 타당성 용역 발주 ----- '08.6.30
  - 용역기간 : '08.6.30 ~ 8.18(50일간)
- 재활용품선별장 노동조합에 민간위탁 통보 ----- '08.7.4
  - 결과접수 : 노동조합에서 선별장 운영 불가 통보

- 재활용품선별장 민간위탁 타당성 용역 완료 ----- ‘08.8.18
  - 직영보다 위탁운영시 연평균 3억3천6백만원 초과 세외수익 발생 예상
- 재활용품선별장운영조례안 시의회 상정 ----- ‘08.9.4
  - 일부 수정 가결
- 재활용품선별장 민간위탁 추진계획 수립 ----- ‘08.9.22
  - 시의회동의안, 노조협의(인력배치), 위탁방법, 법적사전 검토 등

## □ 향후 추진 일정

- 재활용품선별장 민간위탁 동의안 시의회 제출 ----- ‘08.10
- 민간위탁 적격심사위원회 구성 ----- ‘08.10
  - 구성인원 : 9명
- 재활용품선별장 민간위탁업체 선정 계획수립 ----- ‘08.10
  - 수탁자 모집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
- 재활용품선별장 민간위탁업체 선정 및 계약 ----- ‘08.11
  - 적격심사위원회 개최 및 위탁운영 협약 체결
- 재활용품선별장 수탁업체 업무 연찬 ----- ‘08.12.1~12.31
- 재활용품선별장 민간위탁 운영 ----- ‘09.1.1

## 【폐기물관리법】

제14조 (생활폐기물의 처리 등) ①특별자치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수집·운반·처리하여야 한다. 다만,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. <개정 2007.8.3>

②특별자치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수집·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. <개정 2007.8.3>

③특별자치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생활폐기물을 수집·운반·처리할 때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. <개정 2007.8.3>

④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수수료를 정하려는 지방자치단체에 폐기물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 징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.

제62조 (권한이나 업무의 위임과 위탁) ①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·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.

②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라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효율적인 관리·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환경부령(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)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리·운영을 맡을 능력이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## 【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】

제4조(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)

①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
1. 단순사실행위인 행정작용
2.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3.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요구되는 사무
4.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

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·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는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.

③ 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가위임사무는 그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부천시의회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④ 시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탁기관에게 지원할 수 있다.